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교 통 · 에 너 지 · 환 경 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항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「관세법」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·에너지·환경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세청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6. ~ 1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3호 중 “때”를 “때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서 「관세법」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여 교통·에너지·환경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) ①법 제15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(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)에게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	제23조(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15조제1항제3호중 외국 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(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)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<단서 신설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때. 다만, 해당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서 「관세법」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</u>

② · ③ (생 략)	<u>에 대하여 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 한다.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3